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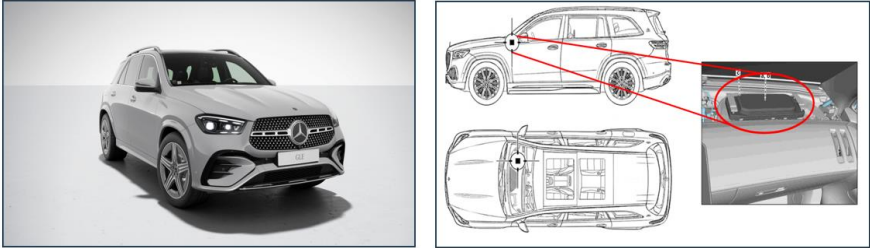
Mercedes-Benz

고객통지문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실내안전장치 (조수석 에어백)와 관련된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 제작결함의 내용

가.	차명 또는 부품명	GLE 450 4MATIC, GLE 350 4MATIC, GLS 450 4MATIC
나.	형식	167159, 167145, 167959
다.	제작년월일	2026-02-09~2026-02-18
라.	결함장치 또는 부품	실내안전장치 (조수석 에어백)
	(사진 또는 이미지)	
마.	제작결함원인	공급업체의 생산 공정 편차로 인해 특정 조수석 에어백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쿠션 소재가 장착되었을 수 있습니다.

2.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내용

가.	시정조치기간	2026 년 5 월 22 일 ~ (1 년 6 개월 이상)
나.	시정조치방법	조수석 에어백 교체
다.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 부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라.	시정조치 비용	제작사에서 조치 비용 부담하며, 무상으로 진행됨.
마.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이로 인해 충돌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의도한 대로 전개되지 않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2 조의 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제작결함시정 관련 보상내용

가.	보상 관련 근거 및 설명	자동차관리법 제 31 조의 2 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나.	보상기간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 년 이내 (2025 년 5 월 22 일 이후)
다.	보상신청 접수장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라.	보상신청 연락처	콜센터(수신자 부담: 080-001-1886)

4. 추가 안내사항

가.	제작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작 결함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콜센터 080-001-1886 (서비스센터 안내, 기타 이의제기 및 문의)

5. 기타 제작자들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자 대상 공지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리콜 차량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리콜 통지받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여객운수사업법개정(시행 `20.10.8)에 따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예약



[QR 코드]

※ <http://www.mercedes-benz.co.kr/>

당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온라인 서비스 예약 및 서비스센터 위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QR 코드 스캔
- ✓ 예약 페이지 이동

- ✓ 차량 정보 입력 후 계속

- ✓ 서비스센터 위치 확인
- ✓ 서비스 예약